

# 올림픽파크 포레온

## 다자녀 특별공급 안내문



### ■ 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

구분	입주자모집공고	특별공급 청약	당첨자 발표	서류제출	계약기간
일정	2022.11.25(금)	2022.12.05(월)	2022.12.15(목)	2022.12.17(토) ~ 2022.12.31(토)	2023.01.03(화) ~ 2023.01.17(화)
방법	올림픽파크 포레온 홈페이지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인터넷 청약(09:00~17:30) (PC 및 스마트폰 앱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개별조회 (로그인 후 개별조회)	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(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-1번지)	

### ■ 유형별 ·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(85㎡ 이하)

구분	49A	계
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(50%)	31	62
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,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(50%)	31	

### 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용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</li> <li>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</li> <li>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</li> <li>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함.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</li> <li>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.</li> <li>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자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제3항)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%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, 나머지 50%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, 수도권(경기도 및 인천광역시) 거주자에게 공급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「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」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</li> <li>또한,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.</li> <li>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해당 지역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/li> </ul>
특별공급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「소형·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,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'소형·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당첨자로 선정된 경우,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.</li> </ul>

### ■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

평점요소	총배점	배점기준		비고	
		기준	점수		
계	100				
미성년 자녀수(1)	40	미성년 자녀 5명 이상	40	자녀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	
		미성년 자녀 4명	35		
		미성년 자녀 3명	30		
영유아 자녀수(2)	15	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	15	영유아(태아, 입양아, 전혼자녀 포함)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	
		자녀 중 영유아 2명	10		
		자녀 중 영유아 1명	5		
세대구성(3)	5	3세대 이상	5	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	
		한부모 가족	5		공급 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무주택기간(4)	20	10년 이상	20	배우자의 직계존속(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도 한정)도 무주택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	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	청약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	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
해당 시·도 거주기간(5)	15	10년 이상	15	공급 신청자가 성년(만 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본다.	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	
입주자저축가입기간(6)	5	10년 이상	5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	

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(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)에 한함)  
 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  
 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
 ※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자